

베트남 개요표

1.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규정

- 관리기관 : 베트남 보건부
- 관련규정

구분	규정명	비고
식품 첨가물 사용기준	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규정(2015-08/TT-BYT) : 아래 2012-27의 개정안 부록1) 허가된 식품첨가물 목록 부록2)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대 제한 기준	링크 ¹⁾
	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규정(2012-27/TT-BYT) : 첨가물 규정이며 2015년에 개정됨	
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	식품의 생화학적 오염 최대기준치에 대한 규정 (Part 8 of Decision 46/2007/QĐ-BYT) : 생화학오염의 최대치와 가공보조제의 기준 허용치 목록	
	미생물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 기준 (05/2012; QCVN 8-3:2011)	
	중금속 오염에 대한 국가기술기준 (02/2011; QCVN 8-2:2011)	
	곰팡이 독소오염에 대한 국가기술기준 (02/2011; QCVN 8-1:2012/BYT)	
	식품속 동물성의약품 최대사용제한 규정(2013-24/TT-BYT) Maximum limits for veterinary drug residues in food	

2. DB 참고사항

- 식품첨가물 기준인 2015-08 문서 외의 식품첨가물은 코덱스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한다.
- 식품첨가물의 정의
 - 식품첨가물은 의도적으로 생산, 가공, 처리, 포장, 운송 및 식품 보존에 기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하며, 거의 또는 전혀 영양 가치가 없다.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영양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

¹⁾ 베트남 국가기준(TVCN) 검색 :

<http://tcvn.gov.vn/sites/head/en/tim-kiem-tieu-chuan.aspx?sk=&cat=tcvn&AspxAutoDetectCookieSupport=1>

지만, 추가 오염물질 또는 물질은 혼합하면 안된다. 식품이나 식품 성분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.

○ 유해물질의 정의

- 2007년 12월에 보건부에서 공표한 「화학물질 및 미생물 오염제한 규정 (46/2007/QD-BYT)」결정서를 근거로 특정식품에 해당하는 금속, 미생물, 곰팡이 감염의 최대 허용치를 제한하고 있다.